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961
----------	-------

발의연월일 : 2025. 6. 20.

발 의 자 : 박희승·윤준병·박상혁
이해식·박민규·남인순
이재정·한민수·오세희
박홍배·김 윤·강득구
김한규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4명(‘24.12.)으로 수년째 전 세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조사결과 남성의 92.1%, 여성의 89.7%가 ‘근로 시간과 육아시간의 조화’를 출산 의향의 주요 조건으로 꼽은 만큼, 저출생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시급함.

한편, 현행법은 육아휴직을 제도화하면서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육아휴직 기간을 근로기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할 수 없다고 답한 사업체 중 1/3은 직장 분위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할 수 없다고 답변(2023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고용노동부)하였고, 한 시민단체 조사에 따르면 24.9%가 육

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한 후 불이익을 경험(2024, 직장갑질119)했다고 답변하는 등 여전히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불리한 처우가 이뤄지고 있음.

특히,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기간을 승진소요기간에 산입하지 않거나(46%) 일부 기간만 승진소요기간에 산입(23.7%)하는 등 육아휴직에 대한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의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 경우를 구체화하여 법률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 및 승진소요기간에 모두 산입하도록 명문화하여 육아휴직 사용자의 승진 심사에서의 불이익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19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본문 중 “해고나 그 밖의”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근속기간”을 “근속기간 및 승진소요기간”으로 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한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쳐오는 행위 또는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5. 그 밖에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소요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승진소요기간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9조(육아휴직) ①·② (생략)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u>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u> ,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육아휴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 ----- ----- ----. ----- ----- ----.
<신 설>	1. <u>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한 조치</u>
<신 설>	2. <u>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u>
<신 설>	3. <u>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u>
<신 설>	4. <u>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또는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u>

<u><신 설></u>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u>근속기간</u>에 포함한다. ⑤ · ⑥ (생 략)	<u>행위</u> 5. 그 밖에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u>처우</u> ④ ----- ----- ----- -----. <u>근속기간 및 승진소요기간</u>----- -----. ⑤ · ⑥ (현행과 같음)
--	--